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793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3

I. 개요

1.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79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12. 20.

(3) 회 부 일 : 2024. 12.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사태가 직후인 지난 12월 3일부터 동월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조사됨.

비상계엄과 탄핵이 겹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골목상권은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식업, 행사 대행업, 숙박업 등의 업종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금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제도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30%¹⁾,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①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②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③ 전통시장	4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④ 대중교통	40%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⑥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 등	30%		도서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²⁾ 200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 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공제율을 소폭 인하하였으며,³⁾ 2007년에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20% 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률을 20%로 증가시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음.⁴⁾ 이후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 인상(2009년 개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1년 개정),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3년 개정), 서민 중산

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함.

4) 이를 통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늘려야하며, 일단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음. 또한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충 세부담 경감을 위한 급여수준별 한도 조정(2016년 개정), 도서
공연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8년 개정) 등 소비심리 개선
과 건전소비 문화 정착,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
이 이루어졌음.⁵⁾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조
9,458억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4조 1,183억원, 2025년에는 4
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18,537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5) “2018 조세특례심층평가(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2018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박용갑의원안)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대중교통</td><td>40%</td></tr><tr><td>- 전통시장</td><td>4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40%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대중교통</td><td>40%</td></tr><tr><td>- 전통시장 등</td><td>5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등	5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4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등	50%																									
○ 공제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td><td></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2">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문화비</td><td></td><td>-</td></tr><tr><td colspan="2">24년 소비 증가분</td><td colspan="2">100</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24년 소비 증가분		100		※ 전통시장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 ○ 공제한도: (현행과 같음)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24년 소비 증가분		100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 박용갑의원안 2024. 12. 20. 제출(의안번호 6793)

□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첫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2023년 3조 9,458억원이고, 2024년의 잠정 조세지출 규모는 4조 1,183억원, 2025년의 잠정 조세지출 규모는 4조 3,693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동 소득공제가 일몰될 경우 근로소득 가계의 세부담 증가, 가처분 소득 감소 및 소비 감소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실상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소득공제가 일몰될 경우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약 20년이 넘게 동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현금영수증 수취 문화의 정착 등이 이루어져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상당 부분 진척된 반면, 동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는 약 296억 7천만건

에 달하며, 결제금액은 약 1,316조원으로 2017년에 비해 결제 건수는 약 103억건, 결제금액은 약 442조원 증가하였음. 또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거래 건수도 약 45억 8,300만건 수준이고, 관련 거래액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신용카드 등 결제 현황]

(단위: 천건, 십억원)

연도	2001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23년	2024년
건수	1,009,462	4,017,248.1	10,069,586.2	19,341,790.9	28,608,422.5	29,667,394.6
금액	229,951.4	423,063.4	648,263.9	874,205.4	1,262,875.4	1,316,056

*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IC카드를 포함
자료: 「지급수단별 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및 발급건수]

(단위: 억원, 백만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발급금액	1,185,761	1,230,447	1,420,393	1,562,471	1,671,235
발급건수	4,508	4,132	4,327	4,476	4,583

자료: 「9-3-3.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I (지역, 업태, 발급금액)」, 국세통계포털(TASIS)

둘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자에 더 크게 귀착되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동 특례제도는 소득공제 제도로서, 「소득세법」 상 더 높은 한계세율⁶⁾에 직면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여력이 더 큰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더 큰 세제혜택이 귀착되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경우 2026년~2029년 기간 동안 연평균 3조 3,245억원, 총 13조 3,2981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	45%

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용분 소득공제 신설 등(박용갑의원안, 박수영의원안)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신설></td><td></td></tr><tr><td>- 대중교통</td><td>40%</td></tr><tr><td>- 전통시장 - <신설></td><td>4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신설>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 <신설>	40%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영세소상공인(박수영의원안)</td><td>30%</td></tr><tr><td>- 대중교통</td><td>40%</td></tr><tr><td>- 전통시장 - 소상공인 (박용갑의원안)</td><td>50% (5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영세소상공인(박수영의원안)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 소상공인 (박용갑의원안)	50% (5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신설>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 <신설>	4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영세소상공인(박수영의원안)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 소상공인 (박용갑의원안)	50% (50%)																																		
○ 공제 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h colspan="2">공제 한도</th><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2">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r><tr><td>문화비</td><td></td><td>-</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 공제 한도: (현행과 같음)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h colspan="2">공제 한도</th><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4">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3">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r><tr><td>문화비</td><td>해당없음</td></tr><tr><td>25년도 상반기 소비 증가분</td><td colspan="2">100만원(박수영의원안)</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해당없음	25년도 상반기 소비 증가분	100만원(박수영의원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해당없음																															
	25년도 상반기 소비 증가분	100만원(박수영의원안)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박수영의원안) 2028.12.31. (박용갑의원안)																																		

* 박용갑의원안 2024. 12. 20. 제출(의안번호 6793), 박수영의원안 2025.1.23. 제출(의안번호 7799)

□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 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조정하며(박용갑의원안),
- ②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⁷⁾(이하 “영세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박용갑의원안, 박수영의원안).

먼저 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 비해 10%p 높은 50%로 상향조정 하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체감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비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심리의 자극을 도모할 수 있음.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⁸⁾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 속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져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며, 대외신인도의 하향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를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상향되는 경우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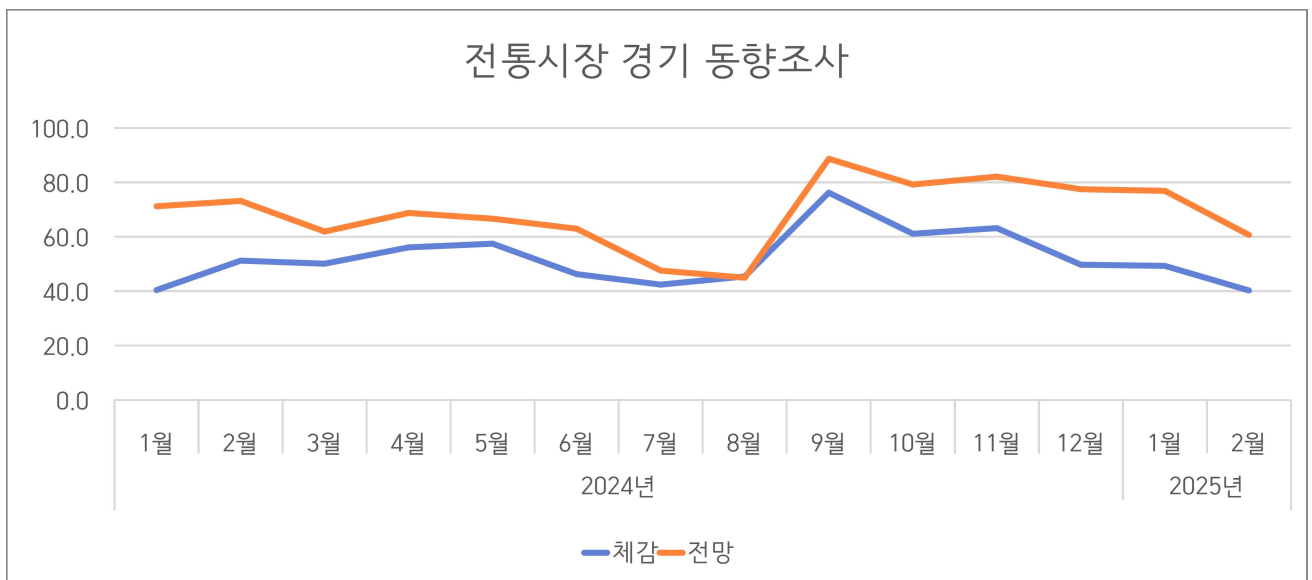
7).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대가(나목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2023년 매출액 기준 1억 400만원 이하의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종등은 제외됨.

8) 「2025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2025. 1. 2.

여할 가능성이 있음.

둘째,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2024년 이후 전통 시장 체감 BSI가 100 미만으로 낮게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확대는 전통시장으로의 소비자 방문 및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전통시장 체감 및 전망 경기지수(BSI)]



* BSI 100 이상은 경기 호전, 100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

자료: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1.

□ 다만,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동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식료품 주 구입장소 중 재래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2.2%에 불과하였고, 식료품 구입장소를 선택하는 주된 기준은 접근성, 가격, 품질 순이며, 저렴

한 가격을 기준으로 식료품 구입장소를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도 감소추세인 것으로 조사⁹⁾되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정책은 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소비 진작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식료품 주 구입 장소 비교]

(단위: %)

구입 장소	비중
대형할인점	32.5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29.9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	15.7
재래(전통)시장	12.2
통신판매	5.4
편의점	1.2
친환경 식품 전문점	0.7
백화점	0.7
기타	1.7

자료: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p.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가구의 식료품 주 구입장소 선택 이유]

(단위: %)

이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30.3	29.5	31.3	27.8
- 품질이 좋아서	19.9	18.7	19.2	18.3
- 가격이 저렴해서	19.5	18.5	16.0	18.8
- 식료품 외 다른 상품도 구입	13.1	14.2	15.5	15.0
- 직접 배달해주므로	6.4	5.8	5.3	6.4
- 상품이 다양해서	9.6	10.8	10.2	10.6
-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1.2	2.1	2.2	2.7
- 지역산 농식품 구입	0.0	0.4	0.2	0.4

자료: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p.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9)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둘째, 소비진작을 위한 소득공제율의 상향 정책이 상시화될 경우 일정 기간 도과 후 해당 정책의 효과가 약화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항구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⁰⁾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경우 2026년~2029년 기간 동안 연평균 3조 3,245억원, 총 13조 3,2981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박용갑의원안)

□ 다음, ② 소상공인 및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려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먼저 박용갑의원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¹¹⁾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소득공제율은 개정안에서 규정한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50% 공제율을 적용하며,

박수영의원안은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불한 금액의 30%에

10) 개인소득세 인하는 2~3년 이후 부터는 GDP와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모두 소멸된다는 경험적 연구 또한 존재함. "Short term tax cuts, long term stimulu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2, James Cloyne.

11) 「소상공인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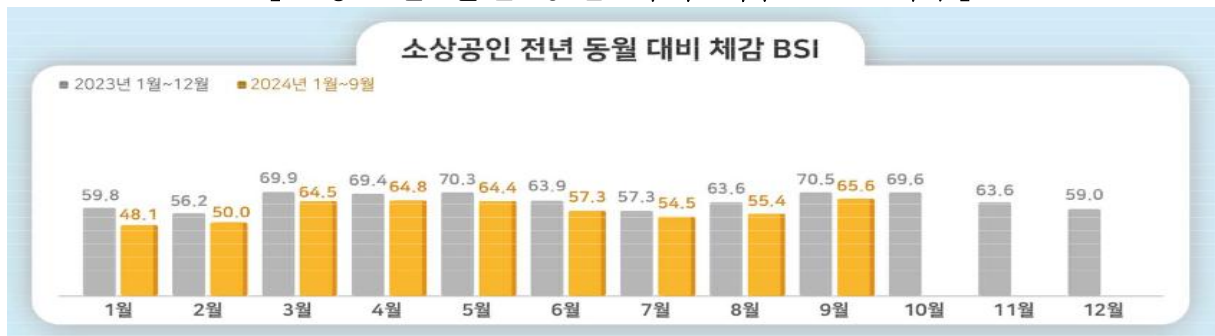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소상공인 체감 BSI¹²⁾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됨.

[소상공인 전년 동월 대비 체감 BS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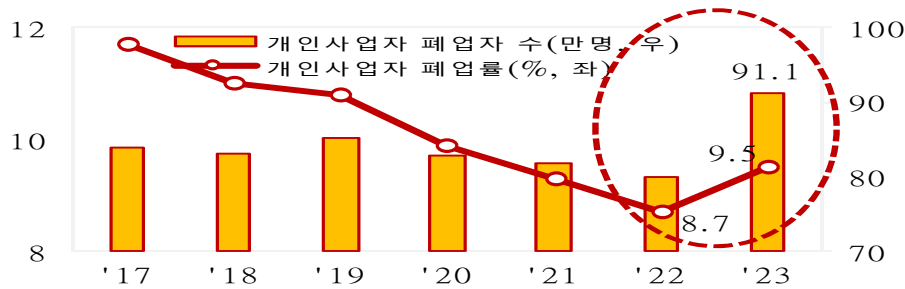


자료: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10.

한편, 코로나19 지원 정책의 영향 등으로 2022년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2023년에 들어 상승세로 전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12) BSI 지수란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경기 예측 지표로서, BSI 지수가 100 이상인 경우 경기 실적이 호전되었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인 경우는 경기 실적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함.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출처: 국세통계(통계청)

둘째, 통상적으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전통 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세제지원 정책을 과거 추진¹³⁾하였는데,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대표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412만 5,000개¹⁴⁾로 조사되었는데, 2022년 전통시장 내 점포 수는 23만 2,206개¹⁵⁾로 조사되어 전체 소상공인 중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비중은 약 5.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¹⁶⁾.

따라서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p 한시 상향하여 적용한바 있음.

14)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3.12.27.

15)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 12.

16) 참고로 위 조사들에 따를 때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714만 3,000명이고, 전통시장 점포 종사자 수는 31만 6,315명으로 전통시장이 약 4.4%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첫째, 공제 대상 확대에 의한 세수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귀속소득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감면액이 약 3조 9,458억원¹⁷⁾이고,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의 연간 총 매출액은 전통시장의 연간 총 매출액의 약 24.9배 수준임. 개정안과 같이 30%~5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소상공인(박용갑의원안) 및 영세소상공인(박수영의원안)이 포함되는 경우 적용 대상의 확대에 상당 규모의 세수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022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액 비교]

구 분	사업체 수	연간 총 매출액
소상공인	4,125,000개	965조 2,500억원
전통시장	232,206개	38조 8,179억원

자료: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3.12.27.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 12

둘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전통시장 소비를 구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박용갑의원안의 경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총 공제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즉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법동조 제10항에 따르는 공제한도(연간 250만원 단, 과세연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를 따르고 있음.

17) 2024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은 4조 1,1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 비해 비대면 주문이 간편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다른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한도 역시 전통시장사용분 등과 합산하여 적용됨. 이 경우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였을 물품을 다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를 유인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전통시장사용분 추가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박용갑의원안의 경우 소상공인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소비자가 소비 시 소상공인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소득공제 집행을 위한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르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¹⁸⁾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1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단서 생략)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각 호 생략)

(* 각호: 일용근로자 3개월 내 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등)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각 호 생략)

기본법」 상 “소기업” 여부는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및 평균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의 요건 중 “상시 근로자” 여부는 근로자의 임원 여부 및 근로기간,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결정¹⁹⁾되므로 일반 소비자가 소비 행위 시 해당 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또한, 사후적으로 소비항목별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음.

넷째, 박수영의원안의 소득공제 대상인 영세소상공인을 일반 소비자들끼리 구분하기 어려워, 개정안이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소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여부는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세무정보로,²⁰⁾ 국민이 일상 중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단서 생략)

(각 호 생략)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별표3 생략])

19)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고,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가 소상공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

20)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자 유형을 구별하여 소비를 할 가능성이 낮아 해당 사업자들의 매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한편, 두 개정안 모두 소상공인 및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관련 별도의 공제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존의 공제한도²¹⁾를 따르고 있음. 이로 인해 기존의 소비 사용분으로 공제한도를 충족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소상공인 및 영세소상공인 업체에서의 소비 유인이 더욱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21) 연간 250만원 단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